

# 성북구 인권위원회 회의록

<b>일 시</b>	2016.2.24.(수) 15:30 - 18:00	<b>장 소</b>	자원봉사상담실 (구청7층)
<b>참석자</b>	12명(김덕진, 김은영, 김한민, 목소영, 박다혜, 박현숙, 배미영, 윤성봉, 윤정섭, 윤지영, 이윤하, 최도용)		
<b>회 의 내 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 회의시작</li> <li>○ ○○○ : 전차회의 결과 보고,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권고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설명함. 권고를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li> <li>○ ○○○ : 권고안에 대하여 전면수용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부수용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주민 감시 또는 사생활 침해를 금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관련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주의를 요하는 사항조차 넣지 않은 것은 수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다.</li> <li>○ ○○○ : 인권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다.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먼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먼저 조례 설명을 바란다.</li> <li>○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설명</li> <li>○ ○○○ : 불임자료에 조례안이 나와 있다. 위원님들이 먼저 보시기를 바란다. 검진비와 상담 등 진료행위에 대한 상담료 지원을 위해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를 만든 것 같다.</li> <li>○ ○○○ : 50대는 베이비부머 세대인데 우울증과 자살위험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면제나 할인 행위의 경우는 자치구 조례에 의하여 보건소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27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li> <li>○ ○○○ : 50대의 발병률이 높은 것은 통계조사 결과가 있는 것인가</li> <li>○ ○○○ : 최근에 우울증 진료 환자 중에서 50대가 전체 대상자 중 2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4년 동안 검사한 결과를 보면 2009년에는 115,992명이었는데, 2014년 151,009명으로 30.1%가 증가한 것이 통계조사로 나와 있다.</li> <li>○ ○○○ : 성북구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가</li> <li>○ ○○○ : 아니다. 25개 전 구청에서 다 같이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li> </ul>			

회 의 내 용
○ ○○○ : 서울시의 지침이 있는 것인가
○ ○○○ : 그렇다. 올해 예산은 천만 원이 내려왔는데 100% 시비이다.
○ ○○○ : 조례 제정 시 특정 연령대를 지원하는 경우는 보지를 못해서 정신건강 검진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아직은 꺼려하는 검진이기도 해서 실효성 측면에서는 50대로 한정지를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다른 곳도 이런 식으로 제정하고 있는 것 같다.
○ ○○○ : 지원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5조에서는 ‘본인이 동의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7조에서는 기관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도 기관에서 하고 지원도 기관에서 받는 것 같다.
○ ○○○ : 만56세가 되시는 분들이 1차적인 순서인데 그분들은 성북구 관내 6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관에서 검사 받으시면 된다. 그 외 50대는 성북구 보건소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허락한 분들에 한해서 검사받으시면 된다. 검사는 1차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면 그 기관에서 성북구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이다.
○ ○○○ : 연천만원으로 충분한 예산인지 모르겠다. 성북구만의 자료를 갖고 있는가.
○ ○○○ : 1인당 얼마정도의 예산이 드는 지는 계산된 것이 있다. 연 천만원을 가지고 몇 명 정도나 사업 시행이 가능한 것인지
○ ○○○ : 검사도구가 있는데 검사도구 2가지로 기본적인 검사를 해서 1차 검사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3만 원 정도이다. 2회차, 3회차에서는 만원씩 증가하고 있다. 한 사람당 최대 5만원씩 지원이 되고, 그것은 기본적인 검사를 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저희는 거기까지만 지원해드리고, 약물이라든지 추가적인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천만원에 대해서는 3백만 원은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검진비용인데 최대 5만원씩 했을 때 150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
○ ○○○ : 7조 2항에 보면 검진내역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해야 할 것 같다. 동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
○ ○○○ : 거기에는 성별, 나이, 주소, 연락처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 외 본인 질병에 대한 정보 내용에 대한 동의도 들어가 있다.
○ ○○○ : 기타 정보는 안 들어가나
○ ○○○ : 그렇다
○ ○○○ : 센터에서 인권영향 평가한 결과가 있다. 지역협의체의 구성에 있

### 회 의 내 용

- 어서 성별할당규정을 마련하도록 했고, 비밀누설금지 조항을 신설한다는 의견을 냈다.
- ○○○ : 동작구의 경우 정신보건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구도 있나
  - ○○○ : 우리 구에도 있는데 정신병원에서 입원환자가 6개월 이상 경과했을 경우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연장을 할 것인지 퇴원을 시킬 것인지 논의하는 심의위원회이고 우리는 입원기관이 있는 병원이 고려대 안암병원인데 거기서는 6개월 이상을 입원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몇 년 동안 그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 ○○○ : 센터에서 검토의견을 주었는데 그대로 권고를 할 것인지 의견을 주었으면 좋겠다.
  - ○○○ : 센터에서 낸 의견을 수용한다고 한다면 구지 권고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 ○○○ : 인권센터에서 검토의견이 와서 팀원들과 회의를 했는데, 검토의견대로 해서 성별할당규정을 마련하고 비밀유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 ○○○ : 이런 경우는 어떻게 기록으로 남는지, 인권센터가 검토의견을 주어서 부서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권고를 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절차를 생략해서 좋은 것 같다.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원회 조정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 같다. 센터에서 조정이라고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다.
  - ○○○ :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위원들 : 동의한다.
  - ○○○ : 인권센터 검토 의견 중 '알게 될 수 있는'을 '알게 된'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 ○○○ :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인권센터가 낸 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다.
  - ○○○ :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한 설명
  - ○○○ : 이 조례의 개정 취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개정안의 성과평가만 통과하면 계속해서 연임한다는 뜻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1년 단위로 연임하는 규정이 다른데에도 있다.
  - ○○○ : 서울문화재단 조례를 보고 왔는데 거기는 이런 조항은 없고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법인에서는 이사를 계속 연임하기도 한다.
  - ○○○ : 서울시에 문화재단 관련 조례가 있는 구는 몇 개구가 있나.

### 회 의 내 용

- ○○○ : 많아야 10개 구 정도인 것 같다.
- ○○○ : 마포구 같은 경우는 이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규정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 ○○○ : 이것이 우리가 검토할 사항인지는 모르겠다.
- ○○○ : 문화재단이 뭐하는 곳인지 몰라서 이것이 검토할 사항인지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
- ○○○ : 이 조례는 인권적인 검토인지. 정책적인 측면의 검토인지 가능하기가 어렵다.
- ○○○ : 그것을 분명하게 나누기는 어려울 것이나, 문화재단이나 복지에 관한 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고 보면, 다양한 문화를 접할 권리라든지, 보편적인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는데 특정한 사람이 그 일을 오랫동안 시행함으로써 다양성이 훼손되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문화향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명백한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 ○○○ :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 이것은 의회와 이사회에서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지 인권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
- ○○○ : 그동안도 인권과 무관해 보이는 수없이 많은 조례를 인권영향평가를 해왔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 ○○○ : 이것은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인권위원회가 검토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
- ○○○ : 계속 연임이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비리문제나 그런 것은 인권에 직접적인 침해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차별적 요소를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 ○○○ :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키우면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을 보면 인권적인 사안인지 모르겠고 정책적인 사안인지 않나 생각이 든다.
- ○○○ : 우려는 있으나 의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식의 안은 있을 수 있으나, 인권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 ○○○ : 이때까지 올라 온 조례는 권고를 하거나 권고를 할 사항이 없거나,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것도 있었다.
- ○○○ : 단기로 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임기 제한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되는 것 같다.

### 회의 내용

- ○○○ : 연임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조직이 건강하게 굴러가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 ○○○ : 임기 제한을 3회로 둔다든지 이런식의 권고를 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이렇게 임기가 무제한인 것이 문제가 없다라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다. 의견표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 : 내용 구성을 더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 ○○○ : 이 건이 심의하지 않을 사항도 아니고, 우리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의견서가 아니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 줄 정도로만 하는 것은 어떨까
- ○○○ : 제 의견은 저런 것조차 표명하지 않고 그냥 해당 없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너무 형식주의에 빠질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인권영향평가를 제대로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방식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검토사항에서 뺀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 ○○○ : 각자 의견을 다 들어봤으면 좋겠다. 해당사항으로 뺄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 ○○○ : 참여권을 제한한다라는지 성북구의 문화향유권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마무리되는 시기가 없이 평생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 ○○○ : 제한규정이 없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인권위에서 인권영향평가를 거쳐서 어떤 의견을 낼만 한 사안인가의 문제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본다면 적절하지 않다고는 생각하나 이것이 권리침해의 가능성이 있나하고 본다면, 권고든 의견이든 낼 수는 없는 것 같다.
- ○○○ : 동의한다. 장기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는 되지만 하지만 연임하는 것에 대한 심사의 문제이지 그것 때문에 인권문제로까지 가져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 ○○○ : 해당사항 없다고 하면 다 동의하는 것같이 보여질까봐 그것이 째 째한 것 같다.
- ○○○ : 이것은 누군가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문제이든 부패방지의 문제이든 이것이 인권과 무관하다는 보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최소한의 권고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체로 모든 조례가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이나 정책의 효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든 표명하는 것이 좋겠다. 할 수만 있다면.
- ○○○ : 형식적으로 어떻게 워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사회가 없으면

### 회의 내용

- 어떤 권위를 가지고 강제를 하거나 할텐데 그분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이나 과정도 어느 정도 열어두어야 하는 것 같다. 아까 말씀하신 정도로 의견 표명하는 것은 어떤지.
- ○○○ : 인권위원회는 구청장의 견제수단이기도 하다. 구청장이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주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자문을 해주는 차원에서 인권영향평가를 하고 있지 않은가. 솔직하게 말한다면 권고를 하고 싶다. 임기의 제한을 두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 ○○○ : 장기 무제한 연임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조항을 넣어서 하자는 뜻인가.
- ○○○ : 권고, 의견표명, 해당 없음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것을 표결로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 ○○○ : 의견표명을 하기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것 같다.
- ○○○ : 의견표명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 ○○○ : 의견표명을 한다면 ‘성북구민의 다양한 문화예술향유권을 위해 상임이사 또는 선임직 임원의 임기에는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 이 정도는 어떤가.
- ○○○ : 모든 것이 의사합체가 있을 수는 없는 것 같다. 우리의 의사결정 규칙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동의하는 분의 이름으로 의견 표명하는 것은 어떤가. 이것은 격렬하게 논쟁을 할 만한 것도 아닌 것 같다.
- ○○○ : 이런 논쟁을 하면서 앞으로 다룰 것들에 대한 범위나 조례개정에 관한 고민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 ○○○ : 이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동의가 되지 않는데 인권위원회 전원의 이름으로 의견표명 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이럴 때의 처리방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냥 다수의 의견으로 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다.
- ○○○ : 이것이 인권영향평가를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지만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옳다는 의견은 아닌 것인가.
- ○○○ : 거기에 대한 의견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 ○○○ : 장기 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성북구민 다양한 문화향유권을 침해해서가 아니라 이 자체로서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 지자체가 출현해서

### 회 의 내 용

만든 기관은 그 자체가 공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누군가가 장기적으로 이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인권과 연결 지어서 본다면 논리적으로 맞나 하는 의문이 든다.

- ○○○ : 의견을 표명하고 싶기는 한데, 문화향유권을 침해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것 같다.
- ○○○ : 문화향유권이라는 표현보다도 오히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다.
- ○○○ : 다양한 문화예술향유권이라는 것이 한사람이 한다고 다양성이 떨어지느냐 하는 것은(맞지 않다)
- ○○○ : 오히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말에 더 동의가 되는 것 같다.
- ○○○ : 제가 생각하는 인권은 옳고 그름이 명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은 인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서 가능성이 둘 다 열려있는 상황에서 어느 쪽이 더 높다하는 의미로 이것은 인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기는 애매한 것 같다.
- ○○○ : 의견을 표명하자는 것이 다수의 의견인 것 같은데 회의 운영 규정에 따라서 다수결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 ○○○ : 절차가 있으니까 규정대로 하면 될 것 같다.
- ○○○ : 저는 다수결로 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전체 회의를 통해서 합의로 정하는 것이 맞지 표결까지 갈 사항을 아닌 것 같다.
- ○○○ : 저도 해당 없음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 : 저는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수결로 정했으면 좋겠다.
- ○○○ : 해당 없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 ○○○ : 의견표명을 했으면 한다.
- ○○○ : 해당 없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다수결로 정했으면 한다.
- ○○○ : 의견표명이 효율성이 있든 없든 떠나서 의견표명을 했으면 좋겠다.
- ○○○ : 해당 없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 ○○○ : 해당 없음으로 하겠다. 다수결로 처리할 사항도 아닌 것 같다.
- ○○○ : 해당 없음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한다. 의견이 나뉠 때는 '규정대로 하는 것이 뭐가 이상하냐' 하는 부분은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때는 '그것을 다수

### 회 의 내 용

결로 처리하자'는 부분이 '인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하는 생각이 든다. 인권위 결정이 의결을 해서 그것들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의견들을 설득하고 그 가치들이 공유되는 과정에서 입장이 만들어지고 성북구의 구정에 녹아들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후에도 토론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번거로워하기보다는 토론의 결과로 저의 의견도 해당 없음으로 변화했는데 그런 과정들이 중요한 것 같다.

- ○○○ : 이 조항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합의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인권위원회의 의미 인 것 같다. 그것을 의견이 대립된다고 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 다수결로 하는 것보다는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의견은 해당 없음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다.
- ○○○ : 주요 업무 보고, 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회적경제 주체를 위한 인권교육 계획 설명, 직원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영화 '귀향'을 단체 관람하기로 했다. 주민인권학교(안)이 나와있다. 2기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는 8월에 끝나는데 3기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토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 노원, 은평구도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올해는 인권실태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아동들이 인권을 늘면서 배울 수 있는 놀이터 형식으로 인권전시관 조성도 준비 중이다. 인권영향평가 관련 워크숍도 하반기에는 진행 예정이다.
- ○○○ : 진정사건이 접수되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구두로 먼저 보고드린다. 진정사건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다.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도 받았다.
- ○○○ : 안건을 마치겠다.
- ○○○ : 차기 회의를 정하겠다.
- 차기회의 일정 : 2016.3.30.(수) 15:30
- 회의종료
- ※ 회의내용 중 주요논의 및 의견사항에 대해 요약 작성하였음.